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승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17

발의연월일: 2020. 7. 16.

발 의 자:최승재・김성원・권명호

정희용 • 이주환 • 유상범

엄태영 · 김희곤 · 윤영석

태영호 • 박덕흠 • 이종성

박완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·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해당 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사업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,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종사 자 중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 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특히,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과도한 경비지출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 이에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, 소상공인이 그 친족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124조). 법률 제 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4조의 제목 중 "사업주"를 "사업주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사업주"를 "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(이하 "중·소기업 사업주등"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"를 "중·소기업 사업주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중·소기업 사업주"를 "중·소기업 사업주》를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 중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자기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해당소상공인의 근로자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124조(중·소기업 사업주에 대 제124조(중·소기업 사업주 등에 한 특례) ① (생 략) 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중・소기업 <신 설> 사업주 중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자기 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추어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 공하는 사람을 해당 소상공인 의 근로자로 공단의 승인을 받 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 (3) -----\lambda\}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 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 의 4촌 이내의 친족(이하"중ㆍ 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기업 사업주등"이라 한다)---다. ③ 제1항에 따른 중・소기업 ④ 중·소기업 사업주등·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 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으로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	<u>⑤</u> <u>제3항</u>
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	
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	
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	
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	
⑤ 중·소기업 사업주에 대한	<u>⑥</u> 중·소기업 사업주등
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	
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	
다.	
<u>⑥</u> <u>제1항</u> 에 따라 이 법의 적용	<u>⑦</u> 제1항 및 제2항
을 받는 중·소기업 사업주의	
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	

청 및 승인, 보험료의 신고 및

납부, 보험 관계의 소멸, 그 밖

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

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